

국토교통부 공 고 제2024-953호

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5일

국토교통부 장관

##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[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](#)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3조)

: [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](#) 변경

나.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(안 제5조)

: (대상) 버스,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

[\(유가연동보조금\) 2023년 7월 11일 ~ 2024년 8월 31일](#)

다. 시행일

-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622호  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3824, 3825(팩스 044-201-5582)

### 4. 기타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